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96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3 월 2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위험물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소방청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56008호 [2006.8.16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3.15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결과표 (작성항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개 부문 24개표 - 위험물제조소등(8) - 탱크저장소 현황(7) - 2005년도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(2) - 자체소방대(1) - 석유화학단지 현황(1) - 예방규정 제출대상(1) -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(1) - 2005년도 위험물화재(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개 부문 66개표 - 9개부문 46개표 추가(대량 위험물 저장·취급 사업장 현황 취급소종류별 현황 등) - 6개부문 20개표 수정 (전국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, 일반취급소 종류별 현황 등) - 2개부문 4개표 삭제(옥외 탱크저장소 현황, 2005년도 위험물화재 피해 등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(추가46, 수정20, 삭제4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변하는 위험물 관리 현장 반영 필요성 및 이용자 통계수요 확대 등에 따른 결과표 변경 추가
결과표 (지역범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6개 결과표(공통) - 경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6개 결과표(공통) - 경기(남부), 경기(북부) - 세종특별자치시 - 창원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도 세분화 및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시 추가